

## 추가약정서 (판매기업용)

(발주서방식 및 발주서전환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_\_\_\_\_ (이하 “본인” 또는 “협력기업”이라 합니다)은 (주)하나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_\_\_\_\_(이하“구매기업”이라 합니다)의 발주서를 근거로 하는 「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정하며,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 제 1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협력기업으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물품 등을 반복적인 거래형태를 가지고 발주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으로 은행과 미래채권담보대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2. 발주서”라 함은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등을 전자적인 방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송부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3. "매출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채권을 말합니다.
  - 가. 협력기업과 구매기업간 납품계약 체결 후 제 2 호에서 정한 발주서에 따라 협력기업이 향후 취득하게 될 미래채권
  - 나.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 (제 2 호에서 정한 발주서에 따라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물품, 용역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함으로써 협력기업이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
4. "채권확정" 또는 “매출채권 확정”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발주서방식의 경우, 협력기업의 납품으로 구매기업의 대금 지급채무가 확정된 때에 구매기업이 세금계산서 전문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납품완료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확정
  - 나. 발주서전환방식의 경우,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전송하거나 구매론 지급승인 등의 명세를 은행에 전송하여 매출채권을 확정
5. "납품기한"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해야 하는 기한으로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을 말합니다.
6. “발주서 만기일”이라 함은 발주서상의 대금지급 예정일을 말하며, 미래채권담보대출 개별대출 취급시 대출만기일로 지정되나 채권확정 시 대금지급일이 변경될 경우 개별대출 만기일은 대금지급일로 변경됩니다.
7.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납품대금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 제 2 조(대출취급방식)

은행과 구매기업의 협약에 의해 사전 결정한 바에 따라 미래채권담보대출(이하 “미래대출”이라 합니다)의 취급방식을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협력기업은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합니다).

취급방식(택 1)	상품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발주서방식 미래대출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협력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기한 전까지 미래채권을 담보로 발주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출하고 채권확정 시 지정한 대금지급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상환받는 방식의 대출

□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	발주서방식과 같이 미래대출을 취급하되, 채권확정시에는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구매론 지급승인 등의 명세를 은행에 전송하여 매출채권을 확정하며, 은행은 협력기업과 별도 약정한 구매론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자동 실행하여 미래대출을 상환하고 대금지급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구매론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받는 방식의 대출
----------------	--

### 제 3 조(한도약정금액)

원 약정서상의 한도약정금액은 은행이 구매기업에 부여하는 총 한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개별대출의 실행)

-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구매기업에 의하여 은행에 등록된 “발주서” 금액의 80% 범위내에서 대출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출실행시 발주서 만기일로 임시 지정됩니다.
- ③ 발주서방식 미래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출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일부터 납품기한 전 은행영업일까지 : 신청횟수에 제한 없이 대출 신청 가능
  2. 납품기한일부터 채권확정 전까지 : 대출신청 불가
  3. 채권확정일부터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 신청횟수에 제한 없이 대출 신청 가능. 단,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채권확정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④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일로부터 납품기한 전 은행영업일까지 : 최대 5회까지 분할하여 대출 신청 가능
  2. 납품기한일 부터 : 대출 신청 불가

### 제 5 조 (입금계좌 지정)

대출금 또는 매출채권 만기시의 대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 제 6 조 (개별 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① 발주서방식 미래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환하기로 합니다.
  1. 개별대출 취급시 발주서 만기일로 지정된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구매기업이 채권확정 통보 시 지정한 대금지급일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 1 호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 대출금에 대응하는 발주서의 대금지급일에 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합니다.
  3. 개별 대출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채권확정 금액이“0”이거나 채권확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 그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개별대출 만기일 까지는 연체적용을 유예기로 합니다. 단, 상환전까지 개별대출의 추가실행은 불가합니다.
- ②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환하기로 합니다.
  1. 구매기업의 채권확정(구매론 지급승인이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채권발행) 시 개별 채권에 대응하는 협력기업의 미래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구매론 선입금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확정채권대출”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미래대출을 상환합니다.
  2.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되어 채권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채권확정하거나, 본인이 직접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가. 구매론이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한도부족이나 미약정 또는 약정기일이 경과된 경우
    - 나. 휴·폐업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

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라. 개별 발주서의 채권확정금액이 상환하고자 하는 미래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금액 및 실행할 확정채권대출 이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마. 기타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권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 ③ 구매기업이 납품기한까지 채권확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서 만기일이 대출금 상환기일로 확정되며 상환기일에 본인이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④ 개별대출 만기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개별대출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원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로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 7 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을 제한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1.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 2.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 3.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
- 4.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 5. 구매기업이 대금지급일에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연체한 경우
- 6. 본인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있는 경우
- 7.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 및 감액, 반품,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등으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못 받게 된 경우
- 8. 납품기한까지 채권확정되지 않거나, 채권확정금액이 해당 건별 대출금 보다 작을 경우
- 9. 은행이 구매기업과 체결한 미래채권담보대출 협약이 종료된 경우

### 제 8 조 (면책)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9 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1.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허위매출, 현금융통성 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용도 외로 발주서가 등록되어 대출을 받은 경우
- 3. 구매기업에서 협력기업 추천 취소를 은행에 통보한 경우. 다만, 은행여신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4 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합니다.

### 제 10 조(효력순위)

본 추가약정, 원 약정,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원 약정,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20    년    월    일

채무자(본인) \_\_\_\_\_(인)

주        소 \_\_\_\_\_

연대보증인 \_\_\_\_\_(인)

주 소 \_\_\_\_\_

연대보증인 \_\_\_\_\_(인)

주 소 \_\_\_\_\_